

리프레쉬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

Q1. 리프레쉬휴직은 어떤 직원이 사용할 수 있나요?

A. 실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 (실근속 10년 이상자 6개월, 20년 이상자 6개월 or 1년 휴직 가능)

Q2. 리프레쉬휴직은 '실 근속' 10년 이상 직원에 한해 사용 가능한데,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실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?

A. 육아휴직은 실 근속기간에 포함되며, 청원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.

Q3. 리프레쉬휴직 중에도 의료비, 경조금, 건강검진,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회사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
A. 네, 의료비, 경조금, 건강검진 등 사내 복지혜택은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됩니다.

Q4. 현재 1년의 리프레쉬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중입니다. 개인 사유로 중도 복직을 하고 싶은데, 가능한가요?

A. 아니요, 리프레쉬 휴직은 정해진 기간 종료 후 복직하셔야 합니다.

※ 단, 부득이한 사유로 복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사위원회 심의 후 복직여부 결정

Q5. 리프레쉬휴직 시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는지, 복직 후 부여된 연차휴가는 당해년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A. 휴직으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는 익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(단, 당해년도 휴직 후 복직 시 수당지급이 아닌 연차축진 대상)되며, 복직 후 부여된 연차는 당해년도에 소진해야 하나 하반기 복직자에 한해서는 부여 연차의 50%까지 익년도 상반기까지 이월가능합니다.